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10
----------	------

제출일자: 2015. 10. 2.

제 출 자: 광진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이 외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유족 및 미망인을 포함하여 위로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숭
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9조의2)

- 현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1항의“희생·공헌자”에서 “제3조1항의 희생·공
헌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전몰군경 유족 및 미망인 포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9. 10. ~ 9. 29.) 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5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로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단체설립”을 “단체 설립”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국가보훈처소관”을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의2 중 “제3조제1호에 따라 희생·공헌자가”를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국가 또는 다른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포함)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의 규정에 의거”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	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희생·공헌자”라 함은 -----	1. -----란 -----	1. -----란 -----	1. -----란 -----	1. -----란 -----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	2. -----란 -----	2. -----란 -----	2. -----란 -----	2. -----란 -----
3.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로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3. -----란 ----- ----- <u>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3. -----란 ----- ----- <u>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3. -----란 ----- ----- <u>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3. -----란 ----- ----- <u>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	4. -----란 -----	4. -----란 -----	4. -----란 -----	4. -----란 -----
5. “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	5. -----란 「국가유공자 등 <u>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 <u>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u> -----	5. -----란 「국가유공자 등 <u>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 <u>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u> -----	5. -----란 「국가유공자 등 <u>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 <u>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u> -----	5. -----란 「국가유공자 등 <u>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 <u>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u> -----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 따른 -----	----- 따른 -----	----- 따른 -----	----- 따른 -----
제8조(단체 예산지원)	제8조(단체 예산지원)	제8조(단체 예산지원)	제8조(단체 예산지원)	제8조(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 범위에서 -----	----- 범위에서 -----	----- 범위에서 -----	----- 범위에서 -----
제9조(생업 및 복지의 지원)	제9조(생업 및 복지의 지원)	제9조(생업 및 복지의 지원)	제9조(생업 및 복지의 지원)	제9조(생업 및 복지의 지원)
구청장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	----- 범위에서 -----	----- 범위에서 -----	----- 범위에서 -----	----- 범위에서 -----
제9조의2(사망위로금 지급)	제9조의2(사망위로금 지급)	제9조의2(사망위로금 지급)	제9조의2(사망위로금 지급)	제9조의2(사망위로금 지급)
구청장은 제3조제1호에 따라 희생·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	-----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	-----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	-----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
<단서 신설>	----- 다만, 지급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포함)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지급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포함)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지급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포함)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지급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포함)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10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10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10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10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	제8조에 따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	제8조에 따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	제8조에 따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	제8조에 따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 시행에 필요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발생 추계 필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의 단서 규정 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지원하는 사망위로금으로 현재 보훈회원이 가장 많은 4개보훈단체 회원 사망시 지급한 금액이 연 5백만원 미만으로 향후 추가되는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이 지급대상으로 추가되어도 연 100,000천원을 넘지않을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25명 2,500천원 / 2014년 34명 3,400천원

4. 작성자

복지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조희경

복지정책과장 강성구